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1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4.

발 의 자 : 김영진 · 채현일 · 이연희
백혜련 · 김남준 · 신정훈
노종면 · 김 윤 · 이해식
차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해외직구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국제 물류의 증가로 불법·불량·유해물품뿐만 아니라 마약류·총포류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경단계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. 이를 위해서는 관세청과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·활용하고, 공항·항만 등 주요 반입 경로에 대한 감시·단속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현행법은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불법·불량·유해물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관세청의 정보 분석을 통해 확인된 관련 정보를 다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 간 정보의 상호 활용에 한계가 있음. 또한 마약류의 반입·반출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총포류 관련 정보와 공항·항만시

설 출입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확인한 불법·불량·유해물품 관련 정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, 정보를 제공 받은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.

또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총포류 관련 범죄사실 및 총포류 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, 마약류·총포류 및 그 밖의 수출입 금지·제한 물품을 효과적으로 감시·단속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공항·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, 필요한 경우 관세정보시스템과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불법·유해물품 및 마약류·총포류 등의 밀수에 대한 국경단계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137조의2 등).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7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“석궁”을 “석궁(이하 “총포류등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64조의10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등의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불법·불량·유해물품에 대한 정보가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·불량·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264조의11의 제목 중 “마약류등”을 “마약류등 및 총포류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마약류등”을 “마약류등 및 총포류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마약류등”을 “마약류등 및 총포류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”을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

계기관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4항까지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총포류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

② 관세청장은 마약류등, 총포류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·단속을 위하여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을 출입하는 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(이하 이 조에서 “관계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에게 해당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자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327조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시스템과 해당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.

⑥ 제2항에 따른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출입자의 범위,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간 연계 기준·방법 및 절차, 연계 정보의 범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7조의2(승객예약자료의 요청)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(이하 이 조에서 “승객예약자료”라 한다)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. 1. (생략) 2. 제241조제1항·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·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	제137조의2(승객예약자료의 요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검사업무 가. (생 략) 나.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총포·도검· 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 기 및 <u>석궁</u> ② ~ ⑤ (생 략) 제264조의10(불법·불량·유해물 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 청과 협조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 제264조의11(<u>마약류등</u> 관련 정보 의 제출 요구) ①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	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----- ----- -----<u>석궁(이하 “총포류 등”이라 한다)</u>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264조의10(불법·불량·유해물 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 청과 협조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등의 분석을 통 하여 확인된 불법·불량·유해 물품에 대한 정보가 중앙행정 기관의 물품 안전 관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불법·불량·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.</u> 제264조의11(<u>마약류등 및 총포류 등</u>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) ① -----
---	--

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마약류등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
2. · 3. (생략)
- <신설>

<신설>

-----마약류등 및 총포류등-----

--.

1. 마약류등 및 총포류등-----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4.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총포류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

② 관세청장은 마약류등, 총포류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·단속을 위하여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을 출입하는 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(이하 이 조

<u><신 설></u>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264조의6을 준용한다. <u><신 설></u>	에서 “관계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에게 해당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자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32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시스템과 해당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.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----- ----- -----.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----- ----- -----. ⑥ 제2항에 따른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출입자의 범위,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간 연계 기준·방법 및 절차, 연계 정보의 범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-	---